

「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」
2025년도 대기·악취 자가측정 위탁 용역

과 업 지 시 서

2024. 12.



여수시도시관리공단

YEOSU URBAN MANAGEMENT CORPORATION

과업지시서

1. 용역명 :

「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」 2025년도 대기·악취 자가측정 위탁 용역

2. 목 적 :

본 과업지시서는 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대기·악취 분야 오염물질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·분석을 통하여 처리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Data로 활용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환경오염시설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함.

3. 용역범위

1) 측정항목 :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

○ 대기분야

- TMS 미전송항목(31항목): 황화수소(H₂S), 암모니아(NH₃), 이황화탄소(CS₂), 시안화수소(HCN), 포름알데히드(HCOH), 불소화합물(HF), 카드뮴화합물(Cd), 납화합물(Pb), 크롬화합물(Cr), 구리화합물(Cu), 니켈화합물(Ni), 브롬화합물(Br), 벤젠(C₆H₆), 페놀화합물(C₆H₅OH), 수은화합물(Hg), 비소화합물(As), 아연화합물(Zn), 디클로로메탄, 트리클로로에틸렌, 1,3-부타디엔, 아크릴로니트릴, 1,2-디클로로에탄, 클로로포름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 스틸렌, 에틸벤젠, 사염화탄소, 아세트알데히드, 이황화메틸, 베릴륨, 벤조(a)피렌
- 바이오가스보일러(5항목) : 황산화물, 질소산화물, 먼지, 암모니아, 황화수소
- 잉여가스보일러(5항목) : 황산화물, 질소산화물, 먼지, 암모니아, 황화수소
- 탈질탑(1항목) : 암모니아

○ 악취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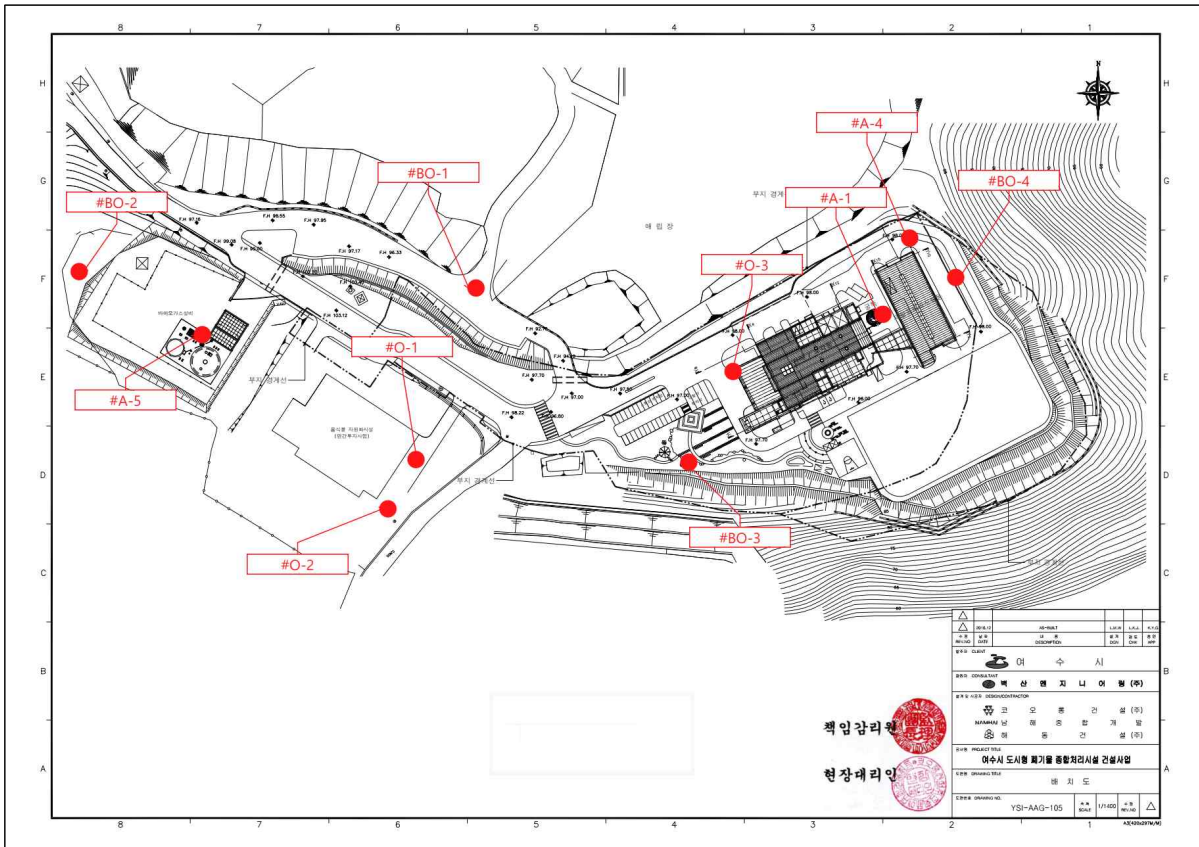
- 복합악취 10지점(배출구 및 부지경계)
- 지정악취 22종 4지점(부지경계) : 암모니아, 메틸메르캅탄, 황화수소, 다이메틸설파이드,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, 트라이메틸아민, 아세트알데히드, 스타이렌, 프로피온알데하이드, 뷰틸알데하이드, n-발레르알데하이드, l-발레르알데하이드, 톨루엔, 자일렌, 메틸에틸케톤, 메틸아이소뷰틸케톤, 뷰틸아세테이트, 프로피온산, n-뷰틸산, n-발레르산, l-발레르산, l-뷰틸알코올

2) 측정방법 : 대기오염공정시험법·악취공정시험기준에 의거 시료 채취 및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항목의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.

3) 측정지점

- 대기 : 소각로 굴뚝 지상 12m지점, 바이오가스보일러, 잉여가스보일러, 탈질탑
- 악취 : 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경계, 배출구

※ 악취 측정지점 위치도



측정지점	측정 지점명	비고
#BO-1	부지 북쪽	복합, 지정
#BO-2	부지 서쪽	복합, 지정
#A-5	바이오가스화시설(스크리버)	복합
#O-1	음식물처리시설(스크리버)	복합
#O-2	음식물처리시설(스크리버)	복합
#BO-3	부지 남쪽	복합, 지정
#BO-4	부지 동쪽	복합, 지정
#A-1	소각시설(굴뚝)	복합
#A-4	스티로폼감용시설(굴뚝)	복합
#O-3	약액세정탑(폐수)	복합

4) 측정주기(횟수)

○ 대기 : 주기는 항목별 아래와 같으나 횟수는 소각장 가동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정지 기간에는 미 실시.

- TMS 미전송항목(31항목) : 1회/분기
- 바이오가스보일러(5항목) : 1회/년
- 잉여가스보일러(5항목) : 1회/년
- 탈질탑(1항목) : 1회/년

○ 악취

- 복합악취 10지점(부지경계, 배출구) : 1회/년
- 지정악취 22종 4지점(부지경계) : 1회/년

※ 계약체결 후 법규 개정, 통합환경허가 등에 따른 측정주기 변경 시에는 변경주기에 따른다.

※ 측정주기 외 발주자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측정에 응해야 한다. 이때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.

5) 측정시기 : 주간(시설물 정상가동 시)

6) 보고서제출 :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 분석 및 성적서 제출

4.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~ 2025. 12. 31.

5. 용역연장 :

용역기간 종료 시 바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차기 계약자 선정 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단, 3조 1항의 측정항목은 변경 될 수 있다.

6. 과업의 진행

1)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며, 착수시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2) 측정 분석결과는 지정된 기일 내 보고하되, 배출허용기준 초과 또는 측정값의 이상 변화를 확인하는 즉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발주처에 우선적으로 유선 통보하고, 이때 발생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공한다.

- 3) 국가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하고,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관련기관 등의 보완 및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- 4) 본 용역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즉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- 5) 본 용역을 수행하는 현장 대리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불성실 또는 부적절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.
- 6)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담당자와 협의 처리하되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른다.

7. 보안사항

- 1)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수행의 대표자 및 과업 종사자는 보안 관리에 만전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제3자에게 기밀 누설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- 2) 용역 수행자는 과업성과를 소각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.
- 3) 보안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.

8. 안전관리

- 1) 본 용역과업의 수행에 종사하는 계약자의 인원과 관련한 안전관리와 재해의 처리, 안전사고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보상 등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. 다만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2) 사고 대응 매뉴얼 및 안전관리 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한다.(착수계 제출시)

9. 측정결과 제출

- 1) 측정결과는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분석을 완료하여 제출한다.
- 2) 측정결과 보고서는 계약자의 양식으로 하되 반드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① 분석 의뢰인
 - ② 분석의뢰 내용
 - ③ 시료채취 일시, 장소 및 방법
 - ④ 항목별 분석결과(대기 관련법의 배출허용기준 및 분석방법 포함)
 - ⑤ 분석 기간 및 종료일
 - ⑥ 시료채취 및 분석 책임자
 - ⑦ 그 외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사항

10. 제반사항 및 비용의 청구 지급

- 1) 본 용역의 비용은 매월 단위로 지급한다.
- 2) 용역비용 청구는 발주자의 지정일자 이내에 문서로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해당 월의 비용은 익월 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본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기간 중에는 유류비, 물가변동, 인건비, 장비의 증감 등의 사유 등 낙찰자의 사유로 인한 단가조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.
- 4) 계약상대자의 원인과 책임으로 인하여 본 용역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대한 그 어떠한 비용도 낙찰자는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.

11. 계약의 해지

- 1) 본 과업지시서의 계약해지사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
- 2) 본 과업수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관련 법규위반 등 발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
- 3) 과업수행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, 양도 또는 사업자 간에 이면공동수행등 본 과업지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
- 4) 과업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, 발주자의 시설운영/관리에 있어서 지장을 주거나 또는 피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

- 5) 용역수행 중 부도, 파산 또는 위법에 따른 행정조치, 과태료 등을 받거나, 발주자의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는 경우
- 6) 과업지시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
- 7) 본 용역을 수행하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경우
- 8) 상기, 2)~7)항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와의 계약해지 외에도 발주자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.

12. 기타사항

- 1) 계약상대자는 환경 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만약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여 당 소각장에 피해를 입힐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2)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.
- 3)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.
- 4)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민원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험 분석한다.
- 5)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측정 지연으로 인하여 소각장 운영에 지장이 초래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토록하거나,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 이때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.